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14
----------	-------

발의연월일 : 2025. 10. 27.

발의자 : 박민규 · 이연희 · 김동아
박정현 · 민병덕 · 민형배
김남희 · 정태호 · 윤준병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조사와 사후 제재 처분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매년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및 적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존과는 다른 적극적인 예방책을 도입하고 조달청의 조사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조달기업 뿐만 아니라 수요기관도 불공정행위를 행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달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부재하여 수요기관의 부당 행위로 인해 조달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가 없더라도 불공정 행위가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 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제35조제1항,
제36조 신설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소속”을 “경우 또는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수요기관의 의무)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 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이하 “부당한 행위 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통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0장에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벌칙) ① 제21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
의 위반행위를 하면, 제36조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35조(과태료) <신 설>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 설>

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통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

제36조(벌칙) ① 제21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제36조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